

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학칙 제49조에 의한 사회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봉사센터(이하 "본 센터")이라 한다.

제3조 (위치) 본 센터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 2 장 사회봉사단

제4조 (소재) 사회봉사단은 서울신학대학교에 둔다.

제5조 (사회봉사단 운영의 목적) 진리와 성결이라는 건학 이념 아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회, 국가, 사회발전에 공헌할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조 (구성) 사회봉사단은 단장, 지도교수, 간사(사회봉사센터 담당자), 사회봉사단원 등으로 구성된다.

제7조 (사회봉사단장) 사회봉사단 단장은 본 대학교 총장으로 한다.

제8조 (사회봉사부단장) 사회봉사단 부단장은 사회봉사센터 소장으로 한다.

제9조 (지도교수) 사회봉사센터 소장을 책임지도교수로 하며, 본 봉사단 활동의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지도교수를 둔다. 지도교수는 사회봉사센터 소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 (사회봉사단원의 자격) 사회봉사단원은 서울신학대학교 및 각 대학원의 학생으로 하며, 교직원과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다.

제11조 (사회봉사단원의 모집) 매 학기 초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, 필요시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2조 (단위 기간)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다.

제13조 (혜택) 봉사단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.

- ① 사회봉사관련 교과목을 신청하고 활동할 경우 해당 학점을 부여한다. 단 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교육, 봉사활동 시간 및 과제물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② 연 1회 이상 우수봉사활동 학생 및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③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봉사활동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봉사활동 학생은 대외 봉사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시키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해외봉사단원 모집시 우수 봉사활동 학생을 우선 추천한다.
- ⑥ 우수봉사활동 학생을 교내 장학생으로 우선 추천할 수 있다.
- ⑦ 봉사 단원의 모든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여 봉사 활동 인증서를 발급한다.
- ⑧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제 3 장 사회봉사센터

제14조 (사회봉사센터 운영의 목적) 대학의 교육목적인 ‘봉사인’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대학봉사활동을 운영,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5조 (소장) 본 센터에 소장을 둔다. 소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6조 (직원) 본 센터에는 사무직원 및 행정 조교, 근로장학생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사회봉사센터 내규에 의한다.

제17조 (사업) 본 센터는 제1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활동을 한다.

- ① 사회봉사에 관한 교과운영
- ② 사회봉사단 조직, 활동 지원
- ③ 사회봉사활동 기획 및 진행
- ④ 사회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
- ⑤ 자원봉사자 발굴, 교육, 배치
- ⑥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
- ⑦ 사회봉사동아리 창단 및 활동 지원사업
- ⑧ 해외사회봉사활동 파견사업
- ⑨ 사회봉사활동 조사, 연구사업
- ⑩ 사회봉사활동 및 관련사업에 대한 홍보
- ⑪ 대외협력 및 지역사회연계 사업
- ⑫ 기타 본 규정의 목적에 맞는 사업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18조 (운영위원회) 봉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해 5~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9조 (위원장 및 운영위원) ① 위원장은 사회봉사센터 소장으로 한다. 운영위원은 학생처장과 직전 사회봉사센터 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사회봉사센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직원 대표 1인을 포함할 수 있다.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학생과장으로 한다.

제20조 (회의) 정기운영위원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하며,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
제21조 (기능) 운영위원회의에서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22조 (의결)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에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사회봉사관련교과목 운영 및 평가

제23조 (교과운영) 다음과 같이 교과목을 운영한다.

- ① “사회봉사실천”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한다.
- ② 삭제<2016. 6. 1.>
- ③ 필요시 “사회봉사실천I”을 교양 선택 과목 1학점으로 과목을 개설, 운영할 수 있으며, 수강신청은 최대 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또한, 기타 필요한 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.

제24조 (사회봉사실천 과목 신청자격) 신청자격은 재학생으로 한다.<개정 2015.03.01>

제25조 (활동시간 및 재해로부터의 보호) 교과목과 관련된 활동시간 및 재해로부터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.<개정 2015.03.01>

- ① 연2학기제(1,2학기)로 운영하며 이론교육 3시간과 봉사시간 27시간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15.03.01>
- ② 계절학기는 필요에 의해 하계와 동계 2회로 개설·운영 할 수 있으며, 활동시간 및 재해로부터의 보호는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<개정 2015.03.01>
- ③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적용기관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외의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본인 책임 하에 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각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03.01>

제26조 (봉사기관 및 시간) 교과목과 관련된 봉사기관 및 봉사시간인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2.3.21.>

- ① (봉사기관) 사회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기관은 연간 활동 자원봉사자가 10인 이상인 각종 법인·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단체·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·보건·의료·기업 등 (단,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경우, 병원내 사회사업실운영 또는 담당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있어, 순순한 비영리 자원봉사활동과 봉사실적이 엄정하게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함)
- ② (봉사시간) 사회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 시간은 ‘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03.01>
- ③ 단,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자원봉사 및 대학주관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봉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 봉사시간은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5.03.01>

제27조(학점인정 및 평가) ① 사회봉사실천의 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P(Pass) 또는 F(Fail)로 구분한다.(단, 2009년, 2010년 입학생은 0학점 부여)

- ② 교육 이후에 실시한 봉사활동 만을 과목이수에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.
- ③ 기본교육 출석, 봉사활동 인정과 관련된 과제물, 봉사활동시간 모두를 종합하여 평가한다.

제 6 장 재정 및 기타

제28조 (회계연도) 본 봉사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29조 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개정) 이 규정은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- ② (중전규정의 폐지) 중전 사회봉사단 규정은 폐지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